

판결 요지

판결 선고 2014년 5월 27일

2009년 (【와】)제 XXXXX 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이하 「제 1 사건」 이라고 말한다)

2009년 (【와】)제 XXXXX 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이하 「제 2 사건」 이라고 말한다)

2011년 (【와】)제 XXXXX 호 손해 배상 등 청구 사건
(이하 「제 3 사건」 이라고 말한다)

구두 변론 종결일 2014년 1월 20일

도쿄(東京) 지방법원 민사 제 45 부

재판장 재판관 야마다 아키라 (山田明)

재판관 오타케 다카시 (大竹貴)

재판관 구보타 히로야 (久保田寛也)

주문요지

성희롱 피해자 A~D 에 대해서 330 만엔에서 440 만엔의 배상 책임을 피고
변재창(이하 【변】 라고 한다) 개인과 피고 교단(종교법인
소목자훈련원=국제복음 그리스도 교회, 이하 【교단】 라고 한다)에
인정했다(「제 1 사건」).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피해자 E 에 대해서는
【변】, 간부교역자 및 교단의 배상 책임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제 2 사건」)
. 【변】 개인과 【교단】 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A~D,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피해자 E, 지원자 4 명에 대한 명예 훼손
등에 기초를 두는 배상 청구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제 3 사건」)

.

이유의 요지

1 성희롱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제 1 사건」).

(1) 피해증언의 신용성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증언은 이하의 이유로 신용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총론부분)

·간부교역자간에서 교환된 메일에는, 다른 여성신도 2 명이 【변】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과, 이 2 명으로부터 직접 사정을 청취한 간부교역자는, 이 2 명의 호소가 허위다라는 인상을 받지 않았고, 【변】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을 받아, 【교단】에 있어서 【변】이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 推認 됨으로, 이 메일은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변】의 언동(간부교역자와의 메일의 교환 등)로부터도 【변】이 여성신도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강하게 推認 되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용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변】과 여성신도와와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고, 원고이외에도 다수의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용성을 떠받친다.

·신도들은, 담임목사인 【변】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교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교적 권위이며, 아주 존경, 경애되는 【변】으로부터 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고분고분한 것을 배우고, 일상적으로도 【변】이나 【변】을 아주 존경·경애해 그 가르침에 고분고분한 다른 신도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교단에 의존하는 생활을 지내 온 사정으로 보면, 신도들이 【변】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 곤란이 되는 것 같은 심리상황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변】의 성희롱 행위를 감수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피해내용이 정합적인 것도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신용성을 서로 높이고 있다.

(각론부분)

【아】 피해자 A 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다.

·2003년 4월에 간부교역자에게 피해를 상담하고, 【변】으로부터 직접 사죄를 받은 취지의 진술은 메일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 지극히 신용성이 높다.

·A가 【변】에게 친애의 정을 내보이는것같은 편지를 보낸것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담임목사인 【변】을 중심으로하는 권위주의적 운영이 행해지는 【교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교적권위이며 아주 존경,경애되는 【변】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교육받아 일상적으로도 【변】 및 【변】을 아주 존경·경애하여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교단】을 의존하는 생활을 해온 사정에 비추어서, 신도들이 【변】의 가르침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지는 심리상황에 빠지기가 쉬운 환경에 있던것과, 영적지도자를 반역하는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것이다라는 가르침도 받고 있었기도 하니까, 【변】의 언행에 의심을 느껴도, 그것에 의심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또는 생각하려고 한것도, 심리학자의 의경서에 의한 심리학적 경지에서도 認知的不協和狀況을 해소시키려고 한 결과로서 합리적으로 이해할수 있고, 성희롱피해를 받았다란 공술과 모순한다고 말할수 없다.

·진술 내용은 구체적 동시에 박진성이 많고, 일관하고 있어, 진술 태도도 진지하며, 남편이나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은 내용의 피해에 대해서 【변】을 깎아내리는 동기도 없고, 【변】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서도 교단재적 당시에 A가 【변】에 대하여 특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 피해자 B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다.

·B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술의 핵심부분의 신용성은 삭감되지 않는다.

·B에 의한 【변】에 대한 친애의 정을 내보이는 메시지 카드 등은 A와 동일하게 생각되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진술 내용은 구체적 동시에 박진성이 많고, 일관하고 있어, 진술 태도도 진지하며, 【변】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서도 교단재적 당시에 B가 【변】에 대하여 특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

【우】 피해자 C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다.

·C가 써서 남긴 메모, 【변】과의 메일, 큐-티노트는 일정정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라는 C의 진술의 핵심부분의 신용성을 삭감하지 않는다.

·C에 의한 【변】에 대한 친애의 정을 내보이는 메시지 카드 등은 A와 동일하게 생각되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진술 내용은 구체적 동시에 박진성이 많고, 일관하고 있어, 진술 태도도 진지하며, 【변】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서도 교단재적 당시에 C가 【변】에 대하여 특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A들에 의한 활동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것 같은 강한 동기가 되었다고도 생각될 수 없다.

【에】 피해자 D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다.

- D가 파스칼씨에게 피해를 상당한 메일은 D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진술 내용은 구체적 동시에 박진성이 많고, 일관하고 있어, 진술 태도도 진지하며, 【변】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서도 교단재적 당시에 D가 【변】에 대하여 특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

【오】 【변】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용할 수 없다

- 원고이외의 여성신도 2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나 간부교역자끼리의 메일 내용과 정합하지 않고, 「안했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다」라고 불합리한 대답을 하고 있다.
- 성희롱 문제발각후도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일지 하지 않은 것일지에 대해서, 애매한 대답에 시종하고, 년지시 인정하는 언동을 잡고 있는 것과는 정합하지 않는다.
- 여성신도와 두사람만 어디에 있다란건 있을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변】은 간부여성교역자와 두 사람만의 환경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거나, C에 대하여 「데이트할까?」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과는 정합하지 않는다.

【가】 조애란의 증언도 신용할 수 없다 · 【변】의 아내이며, 【교단】으로서도 일원이 되어서 피고 변의 결백을 지지하자고 선언되고 있어,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의 절대적 순종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검토 해야 할 곳, (이하생략)도저히 신용할 수 없다.

(2) 피해인정

A~D에 대해서 합계 70건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본사건(「제1사건」)은, 신도가 절대적으로 고분고분순종하게 되는 담임목사의 입장을 이용하고, 성경의 가르침 등에 핑계삼아서 수많은 성희롱 행위에 미치고 있었던 것이며, 피해자의 【변】에 대한 존경, 경애, 친하게 교제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밝아 뽕개는 지극히 비열한 행위이며, 강한 생리적 혐오감을 품으면서도, 어쩌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고민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피해를 감수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신적 고통은, 피해의 내용이나 피해후의 【변】들의 불성실한

대응에 비추어 보아도 중대함등으로서, 각피해자에 대하여 **【변】** 과 **【교단】** 에 머리말 기재의 배상금 지불 의무를 인정했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 알리바이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된 C의 2007년 2월 17일의 간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접한 일시에 있어서의 피해의 가능성도 포함시켜서 검토되고 있지만 인정에는 이르지 않고, 더욱 일시의 폭을 널리 퍼뜨리면 피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지만, 피고측의 방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여겨졌다.

2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제 2 사건」)

(1) 피해증언의 신용성

E의 피해진술은, 간부교역자에게서 200회의 스쿼트(squat)를 강요당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 증거가 있어 신용할 수 있지만,기타는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다수 볼 수 있어, 환각이나 망상을 증상으로 하는 병든 영향을 받고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E의 진술은 그리 신용할 수 없다.

(2) 피해불인정

【아】 간부교역자에게서 스쿼트(squat)를 200회 강요당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E만이 아닌 체력적으로도 뒤떨어지는 신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명령받고 있어, 지도 방법으로서 사회적으로 합당한가는 의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손해 배상을 인정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는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기타의 E가 호소하는 간부교역자에게서의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변】 이 E의 병상을 알아서 여러가지 작업을 지시하고 있지만, 중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정신적 부담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는 못하고, 가혹한 중노동이라고 인정하는 증거도 없다.

【변】 이 E에 보낸 메일은 병든 E에 대한 표현으로서 상당성에 의문을 느끼는 점은 있지만, 메일의 모두가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전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메일이 어떤 교환으로 보내졌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메일 송신으로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성희롱,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원고들과 지원자가 변이나 교단에 대하여 명예 훼손 등에 의한 배상 의무를 질지에 대해서 (「제 3 사건」)

본민사소송은 부당소송이 아니고, C의 고소도 허위고소에 의한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원자가 한 표현 행위는, 명예 훼손성은 있지만 대상이 되는 사항에 공공성이 있는 표현 행위이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라고 인정할수있고, 대부분이 진실하며, C의 간음 피해나 E의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피해와 같이 피해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상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성희롱,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권력의 괴롭힘】 원고들과 지원자가 변이나 교단에 대하여 명예 훼손 등에 의한 배상 의무를 질 일은 없다.

이상